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군의 계승의식과 이념을 구체화하여 규정〉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99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홍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17.
3. 회부연월일 : 2026. 4.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가 국군의 강령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헌법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군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비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역사적 사명감과 헌법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군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국군의 이념으로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u>국민의 군대</u> 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u>자유민주주의</u> 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군의 강령) ①----- <u>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민의</u> ----- <u>자유민주적 기본질서</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가. 독립군 및 광복군 계승 명시

- 현행법에서는 국군의 강령을 규정하면서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또한 우리 국군이 의병-독립군-한국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가진 국민의 군대라고 설명하고 있음¹⁾.

1)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이에 개정안은 국군의 정통성을 본 법에 명시함으로써 헌법상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법 제5조제2항은 국군의 사명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독립군 및 광복군 계승의 의미는 국군의 이념을 규정한 제1항보다는 국군의 사명을 규정한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임.

또한, 역사적·법률적 정확성을 위해 ‘광복군’보다는 정식 명칭인 ‘한국광복군’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헌법」에 명시된 용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²⁾로 변경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이후 생략)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헌법재판소는 ‘자유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유주의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어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³⁾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와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로 설명하면서, 그 요소로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제시한 바 있음⁴⁾.

□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두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양 용어의 역사적 사용례 및 개념적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일부 연구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반공주의 및 시장 경제주의와 결부된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사용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음⁵⁾.

한편, 현행법 제34조는 군인의 헌법 준수 의무를 규정⁶⁾하고 있으

3)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238 결정

4)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

5) 문지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한국의 헌법 이념: 헌법 전문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제23호, 2019, 107~114면.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4조(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전문 및 제4조에 명시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국군의 강령과 헌법상 가치체계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보임.

따라서 현행 규정의 ‘자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하는 것의 규범적 의미 및 입법적 실익에 대한 평가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헌법 전문에 명기된 일부 내용만을 본 법에 기재하는 것보다는, 국군은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모두 수호해야 함을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 계승’,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대신 ‘헌법 수호’ 문구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10